의안번호	제 150 호
의 결	2007년 월 일
연 월 일	(제 264 회)

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대원 의원외 6인
발의연월일	2007년 10월 4일

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대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150 번 호

발의연월일 : 2007. 10. 4.

발 의 자 : 이대원 · 권광택 · 민경환 ·

이규완 · 이영복 · 박종갑 ·

정윤숙(7인)

1. 제안이유

"첨단산업"을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"전략산업"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 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함을 책임과 의무로 정함(안 제3조).
- 나.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(안 제4조)
- 다. 전략산업 지원사업,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내지 제7조)

- 라.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.
- 마.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연구개발 사업외 예산이 수반되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.
- 바. 위원회 기능 중 인력양성 시책 및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사항추가(안 제11조)
- 사.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2인을 두고, 당연직 위원으로 도 정책관리 실장 및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는 사항 추가(안 제12조)
- 아.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가 하도록 함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□ 관련법령 : 붙임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·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전략산업"이라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산업으로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- 2. "지역연구개발사업"이라 함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첨단기술 및 첨단제품"이라 함은 「산업발전법」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"과학관"이라 함은 「과학관 육성법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시설을 말한다.
- 5. "연구개발과제"라 함은 지역연구개발사업(이하 "연구개발사업"이라

한다)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.

- 6. "연구기관"이라 함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책임과 의무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자체적인 연구개발 강화, 산·학·연·관 협력 증진,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) ①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과학기술분야 시행계획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7조,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.
 -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전략산업 지원사업)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·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전략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
- 2.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사업
- 3. 첨단기술, 첨단제품의 산업화 및 첨단 산업 정보화 지원사업
- 4. 전략산업 관련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
- 5. 전략산업 관련 세미나, 해외 교류·시장 진출, 홍보 지원사업
- 6. 전략산업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판매촉진 사업
- 7. 전략산업 개발 단계별 평가·시험비용 지원
- 8.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정한 사업
- 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과학기술진흥사업) ①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
 - 2.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
 - 3.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
 - 4. 과학기술 협력 국·내외 지원 사업
 - 5. 지식재산권 발굴 육성 사업
 - 6.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사업

- 7. 그 밖의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) ①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과학기술 관련 경진대회 및 지역 과학축전
 - 2. 과학기술 관련 국내·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개최
 - 3.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
 - 4. 과학관 등 과학문화 시설 확충
 - 5. 과학관 육성 및 지원 사업
 - 6. 그 밖의 과학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
 - 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③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·운영) ①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연구개발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도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·관리·평가 지원
 - 2. 연구개발사업의 조사 · 분석

- 3. 연구개발사업의 연계 · 중복 조정
- 4. 도내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지원
- 5.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)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 업외 예산이 수반되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회 설치)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 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 - 1.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 - 2.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,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·공모·평가에 대한 사항
 - 4. 산업체와 기술협력,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 - 5. 벤처기업 창업, 기술·경영·지원사항
 - 6.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
- 제1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투자본부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- 1.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자
- 2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- 3. 그 밖에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- ④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.
-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 사는 전략산업팀장으로 한다.
-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.
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1. 산업정책 분과위원회
 - 2. 과학기술진흥 분과위원회
 - 3. 전략산업 인력양성 분과위원회
- 제15조(실비보상 등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전략산업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·평가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달리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 추진과 관련된 분 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- 제1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령발췌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- 제11조 (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) ①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
 - 2.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 - 3.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
 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·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이상의 시·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
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
 - 4.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산업발전법

제5조 (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·장기산업 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 - 1.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
 - 2.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
 - 3. 산업간 연관효과

□ 과학관 육성법

- 제6조 (등록) ①과학관(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·과학기술자료 및 전문 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 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의 설 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설립목적
 - 2. 명칭
 - 3. 소재지
 - 4.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·주소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,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·주소)
 - 5. 시설명세서
 - 6. 과학기술 자료의 목록

- 7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- ③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(이하 "등록과학관"이라 한다)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.

□ 과학기술 기본법

- 제4조 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 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 (과학기술기본계획)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,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 -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
- 1의2.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·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
- 2. 과학기술투자의 확대
- 3.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
- 3의2.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
- 4. 연구 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
- 5. 기초과학의 진흥
- 6.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,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
- 7. 과학기술지식·정보자원의 확충·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
- 8. 지방과학기술의 진흥
- 9.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
- 10.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
- 11.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
- 12.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
- 13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-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⑤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-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.
- ⑦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교육·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·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 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)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연구개발사업의 지원
 - 2.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
 - 3.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
 - 4. 지방의 과학기술인력·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
 - 5.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 여야 한다.
 -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·연구 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

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- 제32조 (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)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,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·연구기관 등(이하 "정부출연연구기관등"이라 한다)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.
 -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|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(이하 이 조에서 "연구회"라 한다)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 가 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.

□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

- 제5조 (시행계획의 수립)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(이하 "시행계획수립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고,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.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,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

제출받은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,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 에게 알려야 한다.

⑤삭제

- ⑥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,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 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)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의 제출·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관계행정기관장"은 "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, "기본계획"은 "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"으로, "위원회"는 "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"로 본다.

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- 제8조 (연구기관의 설립)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.
 - ②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목적(연구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
- 4.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
- 5. 공고의 방법

[별 표] <개정 2006.12.26>

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(제8조제1항)

기 관 명

- 1. 한국과학기술연구원
- 2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- 3. 한국천문연구원
- 4. 한국생명공학연구원
- 5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- 6. 한국한의학연구원
- 7.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8. 한국전자통신연구원
- 9. 한국건설기술연구원
- 10.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- 11. 한국표준과학연구원
- 12. 한국식품연구원
- 13. 한국해양연구원
- 14. 한국지질자원연구원
- 15. 한국기계연구원
- 16. 한국항공우주연구원
- 17.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- 18. 한국전기연구원
- 19. 한국화학연구원
- 20. 한국원자력연구원